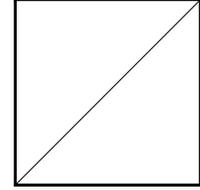


공 개



| | | |
|--------------|------------------------|------------------|
| 의안번호 | 제 110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4. 1. (제 6 차) | |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은 성 수 |
| 제출 연월일 | 2020. 4. 1. |

1. 의결주문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에 대해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3.31.)

(별지)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투자자가 모바일에서 자신이 지정한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 일반/전문투자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투자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해외주식의 종목과 수량(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가능)을 지정하면 미래에셋대우(주)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 (주)과라소프트는 위탁자로서 투자자의 1주 미만 주문을 1주 이상 단위로 보정하기 위한 주문을 내어 (주)과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주)간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을 지시
- (주)과라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 투자자의 신탁재산을 모아 집합주문을 냄으로서 거래비용을 감소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

6. 부가조건

- 해당사항 없음

7. 지정일 : 2020. 4. 1.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붙임1)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 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소관부서 | 자산운용과 | 자산운용감독국 |
| 연 락 처 | 02-2100-2660 | 02-3145-6700 |